

제6조(외국어능력기준)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어 (개정 2018. 12. 21.)

TOEIC	TOEFL			TEPS	NEW TEPS	TOEIC Speaking	OPIc	IELTS
	PBT	CBT	IBT					
700이상	530이상	197이상	79이상	572이상	264이상	110이상	IM2이상	6.5이상

2. 본교 언어교육원(국제언어교육원, 한국어교육원)에서 시행하는 외국
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

3.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
수 있음

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
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. 단, 집중영어 단일강좌(45시간)는 30시간 이
상 출석자(P/F 형식) (개정 2021. 11. 15.)

2. 제2외국어(중국어, 일본어, 프랑스어 등)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
중국어 강좌

3.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

4.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
실시하는 한국어 강좌

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
것으로 간주하고,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
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.

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
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
고,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
한다. (개정 2018. 12. 21., 2020. 2. 10.)